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7.5.30.시행)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-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
 -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(안 제4조)
 - 자동제세동기 관리(안 제6조)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(안 제5조, 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 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에서의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(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)와 안 제6조(관리)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5조, 안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사항을 삭제하여,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및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5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, 상위법에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자동제세동기” 용어를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변경

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
나.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(안 제4조, 안 제6조)

다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6.22. ~ 7.12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**자동제세동기(AED)**”를 “**자동심장충격기**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**자동제세동기(AED)**”를 각각 “**자동심장충격기**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)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치의무시설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
2. 설치권장시설: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제5조제1항 중 “**자동심장 충격기**”를 “**자동심장충격기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지원시**”를 “**지원 시**”로 하고, “**권장 할**”을 “**권장할**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사람에 대하여**”를 “**사람에게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**자동제세동기(AED)**”를 “**자동심장충격기**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**자동제세동기(AED)**”를 “**자동심장충격기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자동제세동기(AED)</u>”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3조(응급의료 지원)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자동제세동기(AED)의 설치</u></p> <p>2. <u>자동제세동기(AED)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<u>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</u>) <u>자동제세동기(AED)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설치 의무 시설은 영등포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구청 및 동 주민센터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<u>노인복지시설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자동심장충격기</u>”--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응급의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자동심장충격기</u>-----</p> <p>2. <u>자동심장충격기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<u>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</u>) <u>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설치 의무시설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</u></p> <p>2. <u>설치권장시설: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</u></p>

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
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
활체육시설

마. 「공연법」 제8조에 따른 공
공 공연장

바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
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시설

2. 설치 권장 시설

가.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
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
시설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
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
설

다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
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
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
시설

라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
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
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
미터 이상인 시설

마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

의한 영화상영관

바.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
사.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제5조(설치 및 권장)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)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(AED)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응급처치 교육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자동제세동기(AED)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
2. 3. (생략)

제5조(설치 및 권장) ① -----
-----자
동심장충격기-----
-----.

② ----- 지원 시 -----

권장할 -----.

<삭 제>

제7조(응급처치 교육) -----
----- 사람에게 -----
-----.

1. 자동심장충격기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홍보)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(AED) 설치·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.

제8조(홍보) ----- 자동심장충격기

--.